

환경친화축산농장

[] 지정신청서

[] 지정사항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(신고인)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※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지정신청서 : 50일 변경신고서 : 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 (신고인)	농장명(성명)	전화번호
	농장 소재지	농장지정번호(변경신고 시)

신청 현 황	가축종류 한우 [], 젖소 [], 돼지 [], 닭 [], 기타 []	사육두수 (두, 수)
	축사 및 부지 면적 축사 : m ² , 부지 : m ²	
	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	

변경 사 항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대표자 성명		
	농장 소재지		
	농장명		
	가축사육 마릿수	(두, 수)	(두, 수)
	축사면적	m ²	m ²
	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·장비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1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(지정사항 변경)을 신청(신고)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(지정신청 시) 1.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.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3. 가축의 종류, 가축사육두수, 축사 및 부지 면적, 농장관리계획,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4.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,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, 퇴비·액비화 물량,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5.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(변경신고 시) 1.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